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2022. 11. 17(목)



농림축산식품부



창립 60주년
중소기업중앙회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요

□ 간담개요

- (추진배경) 농식품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 (일시/장소) 2022.11.17(목) 14:00~15:30 / 이사회회의실(5F)
- (참석대상) 25명
 - 본 회(3) : 중앙회장, 상근부회장, 혁신성장본부장
 - 중소기업(19) : 농식품산업 관련 협동조합(연합회·협회) 이사장(회장)
 - 농식품부(3) : 장관, 식품산업정책관, 식량산업과장
- (건의과제) 18건(현장 14건, 서면 4건)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3:50~14:00	10'	○ (접견실) 티타임 ○ (간담장) 창립60주년 영상 상영	
14:00~14:02	2'	○ 입장 및 기념촬영	
14:02~14:05	3'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4:05~14:15	10'	○ 인사말씀	
14:15~15:25	70'	○ 중소기업 애로건의 및 간담	
15:25~15:30	5'	○ 마무리말씀	
15:30		○ 폐 회	



목 차



◇ 중소기업 애로 건의 (현장)

I. 농기자재 · 농지

- 1. 전기농기계 보급사업(신규) 시행 5
- 2. 유기질비료 사용원료(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 명칭 개선 6
- 3. 석회질비료 장기미신청 농지에 대한 할당공급 시행 8
- 4. 농지에 사용 가능한 재활용골재의 구체적 기준마련 10

II. 수입 · 관세

- 5. 연말 수입대두 부족문제 해소 및 공매 물량 폐지(축소) 17
- 6. WTO-TRQ-FTA 수입권공매 수입미이행 업체 제재완화 19
- 7. 수입팔 직배 시 영세 중소기업 실수요단체의 배정신청량 우선배정 20
- 8. 식품용 매니옥전분 WTO 시장접근물량 신규 배정 22
- 9. 낙화생(땅콩) 할당관세 적용통한 물가부담 완화 24
- 10. 국내 전분산업의 유지방안 마련 26

III. 식품 · 기타

- 11. 김치업체 대상 배추 수급안정 대책 마련 31
- 12. 식품제조업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32
- 13. 약용작물 기반 식품제조업 연구개발 지원 35
- 14. 농협 중소기업자 지위인정에 대한 중소기업장 36



목 차



◇ 중소기업 애로 건의 (서면)

1. 해외전시회 홍보관 설치운영 관련 발주방식 일원화 41
2. 수도권에 김치체험·전시관 건립 지원 43
3. 농업진흥구역 내 농산물가공·처리시설 부지면적 제한완화 44
4.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전산신고 축소대안 마련 46



현 장 건 의

농기자재 · 농지

1

전기농기계 보급사업(신규) 시행

건의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건설기계 보급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기 농기계 보급사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

【 전기자동차·건설기계 지원사례 】

- *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1항
-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전기승용, 전기화물, 건설기계 등
 - 지원금액 : 건설기계의 경우 지자체별 최대 2천만원 내외 지원

- 농기계로 인한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아 엔진장착용 농기계를 전기농기계로 대체·보급 필요
 - 연 400만톤 가량의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기계는 190만대로 추정
 - ※ 면세유류 교부대상 농업기계 :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농업기계 42종
 - 특히 밀폐된 하우스형 농작물의 경우 엔진장착 농기계 사용시 매연 등 발생으로 농작물의 생육저하·질병과 생산인력 인체 피해(호흡기 질병 등) 다수 발생
 - 또한 농촌 인력의 고령화, 인력 부족 등으로 농작물 생산을 기피 또는 포기로 식량난 우려
 - 현재 농업인은 세계적 추세인 친환경 농기계(자율형 무인·전기)를 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 및 보급을 희망
- 정부에서도 ‘2050 농식품 탄소중립 ‘ 추진을 위해 내연기관 중심의 동력원을 전기·수소로 교체하는 R&D사업을 진행 중
 - ※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기술개발 사업 : 5개 과제 73억원 (‘22년)
- 전기(무인) 농기계 보급 시 농식품 분야의 탄소중립 정책목표 조기 달성 및 노동인력 피해 최소화 기대 가능

□ 건의사항

- 전기(무인) 농기계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 마련
 - ‘23년 신규사업으로 과수원 등 밭 농업에 이용되는 전기·무인 농기계의 구입 보조금 지원

2

유기질비료 사용원료 명칭(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 개선

건의자 :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유기질비료 주원료(아주까리유박) 및 부재료 가격 큰폭 상승
 - 주원료(아주까리유박)는 전년대비 50.7% 상승(원화기준 수입가 79.6% ↑)
부재료(포장재, 파레트 등)는 전년 대비 12~29% 상승
 - ※ 출처 :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96개사 조사 ('22.7.7 ~ '22.7.20)
 - 원가에 반영시 전년대비 30%이상의 제품가격 인상요인* 발생
 - * 재료에 포함되지 않은 금리, 전기료, 인건비 등 반영시 인상폭은 더 심화
- (문제점) '23년 정부 지원사업 납품가격이 인상을보다 낮게* 결정돼
제품생산 포기·축소에 따른 친환경농업 차질 등 우려
 - * (원가반영시 추정 인상율) 30 ~ 35% → (실제 인상율, 농협) 10% 내외
 - 수입원료를 국산(건조분말)으로 대체시 인상요인을 상당부분 상쇄할 수 있으나, 원료명칭 문제로 원료대체**가 어려운 상황
 - * 대체필요성 : 품질은 아주까리유박과 대등하고, 가격은 수입 대비 70%이상 저렴
 - * 유기물, N, P, K(%) : (아주까리유박) 78.8, 4.9, 1.95, 1.2 → (건조분말) 80.6, 4.4, 2.2, 1
 - * 원료가격(천원/톤) : (아주까리유박) 303 → (건조분말) 70 (△76.9%)
 - ** 대체어로 요인 : 제품포장지의 품질표시란에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 로 표시토록 되어 있어 해당제품을 폐기물로 인식, 농업인 구매기피 (제품등록율 불과 7.8%)

□ 건의사항

- 아주까리유박 대체원료 사용촉진을 통한 유기질비료 가격 및 공급 안정을 위해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 의 명칭개선 요망
- 건조분말 사용이 활성화될 경우 수급안정에 상당부분 기여예상

< 참고 > 「비료공정규격 설정」 개정안 예시(농진청 고시)

현 행 [별표 5]	개 정 검 토 [별표 5]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음식물류건조분말 또는 남은음식물건조분말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남은 음식물 사료' 라는 명칭을 사용

1. 원부자재 가격변동 조사결과

□ 회원사 조사결과 자재에 따라 전년대비 12.8~50.7% 상승

	아주까리(박톤)	파레트(개)	포장재(매)	래핑필름(포)	톱밥등(톤)	유류대(6개월)
'22년(A)	303,000	8,412	290	60	120,225	1,796.78
'21년(B)	201,045	7,056	257	52	101,562	1,391.20
A/B(%)	50.7	19.2	12.8	15.3	18.4	29.2

자료출처 :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96개 회원사 조사('22.7.7 ~ '22.7.20)

2. 제품가격 추정 : 전년대비 20kg당 2,500~3,000원 상승 추정

○ '23년 생산제품 추정가 : 9,000원 x 31.8% = 11,862원/20kg

i) 원료비 : 인상율(50.7%) × 원가비중(55%) = 27.9%
ii) 포장/파레트비 : 인상율(15%) × 원가비중(15%) = 2.3%
iii) 제조비용 : 인상율(5.2%) × 원가비중(30%) = 1.6%
* 인건비 인상율(4.5%) × 제조비용비중(70%) = 3.2%
* 유류비 인상율(29.2%) × 제조비용비중(7%) = 2.0% 적용
iv) 제품가격 인상율 = i + ii + iii = 27.9 + 2.3 + 1.6 = 31.8%

<참고> 아주까리유박 수입동향

□ 연도별 수입실적(CFR기준)

	'15	'16	'17	'18	'19	'20	'21	'22.1~6
물량(톤)	409,865	488,265	382,875	330,118	393,988	304,822	318,585	149,468
금액(천\$)	54,017	50,977	33,589	31,630	44,806	33,244	40,259	29,023
단가(\$/톤)	131.8	104.4	87.7	95.8	113.7	109.1	126.4	194.2
(천원/톤)	149	121	100	106	133	129	144	239

□ 전년대비 상반기 수입량·수입가격 비교(CFR기준)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1년	물량(톤)	171,423	41,316	45,011	34,712	21,337	16,768	12,276
	금액(천\$)	20,459	4,574	5,112	4,257	2,580	2,177	1,757
'22년	물량(톤)	149,468	23,281	33,270	36,762	22,454	17,270	16,428
	금액(천\$)	29,023	4,747	6,509	7,078	4,093	3,460	3,133
증감율(%)	물량	△12.8	△43.6	△26.1	5.9	5.2	3.0	33.8
	금액	41.8	3.8	27.3	66.3	58.6	58.9	78.3

* 1-6월 평균 수입단가(\$/톤) : ('21년) 119.3 → ('22년) 194.2(63.0% ↑)
 (원화환산, 1,118→1,233) (133천원) (239)(79.6% ↑)

3

석회질비료 장기미신청 농지에 대한 할당공급 시행

건의자 :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 현 황

- 우리나라 토양은 70%이상이 산성암 모재라는 점, 빗물의 산 성질, 연속적인 재배 등의 요인으로 자연상태에서는 토양의 산성화가 심화

< 최근 10년간 토양개량제 비공급 산림지역의 토양 pH의 변화 >



출처 : (기사) '우리나라 산림토양 '산성화' 되고 있다', 2020. 3. 11.

- 토양개량제 중 석회질 비료는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위한 필수 물질
 - (성질) 석회질 비료는 산성토양을 개량하는 데 가장 비용합리적*이고, 중금속이나 염분이 포함되지 않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천연물질
 - (효과) 토양환경을 개선·유지** 시키며, 주요 양분인 칼슘과 마그네슘을 공급
 - * 자급률이 98.3%에 달해 국내 생산량이 거의 내수에 활용되는 풍부한 지하자원
 - **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하여 보수성과 통기성을 개선하고 토양산도를 중성화해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을 증진

< 석회고토비료 토양개량시험 결과 >



출처 : 연세대학교 생태공학연구소, 주영규교수

□ 문제점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2008년 농지할당제에서 농가신청제로 변경되면서 필요농지면적 대비 신청률이 저조*
 - 석회질 비료 정기 신청면적은 전체 밭 면적 중 42.42% (2019년 기준)
 - 개별 농가에서는 살포에 대한 부담과 농촌인구의 고령·부녀화로 인한 신청의 어려움 등으로 석회질 비료에 대한 적극적인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토양산성화는 농작물의 품질 및 안전성과 농가소득 저하로 이어져 농업·농촌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부작용 초래
 - 주요 양분의 흡수가 저해되어 ①농업경영비 증가, 농작물의 품질*과 저장성 저하로 이어져 ②농업소득 감소
 - 작물이 유해 중금속을 흡수하여 ③농작물의 안전 저해, 토양미생물 사멸, 흡수되지 않은 질소, 인산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등 ④토양과 수질환경을 파괴해 농축산물과 농지의 오염으로 영향

<작물의 칼슘과 마그네슘 결핍장해 예시>



사과 배꼽썩음과 토마토 배꼽썩음과 단감 녹반과 사과 고두병(나무) 참외 발효과 고추 배꼽썩음과

출처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 방대한 농지면적이 산성화되기 전에 농업·농촌 보호를 위한 예방책 필요
 - 한번 오염된 토지는 빠르게 개선하기 어려워 회복에 많은 비용 투입

□ 건의사항

- 장기미신청 농지에 예외적으로 석회질비료 할당공급 시행 및 공동살포
 - 산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장기미신청 농지에 대해 석회질비료를 할당공급하고 공동살포 구획으로 지정해 농지의 산도 관리

건의자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재활용골재를 농지의 성토재 등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업계에선 환경유해성에 대한 추가 검증을 위해 환경표지인증까지 받고 있음
- 그러나 농지의 경우 「농지법」의 구체적인 규정미비로 재활용골재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
 - ‘부적합한 재활용 골재’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현재 모든 재활용골재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

▶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객토·성토·절토의 기준

*성토의 기준 :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려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 법제처에서도 재활용골재 관련 농지법령 정비의 필요성 권고
 - 실제 농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지 성토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20)
- 반면,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통과한 순환토사는 농지 성토재로 既활용 중
 - 재활용골재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토양오염우려기준·유해물질용출기준·중금속함량기준 등을 관리 중

□ 건의사항

- 관련 법령에 따라 생산된 재활용골재가 순환토사 등의 품질기준을 충족하면 농지의 성토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성토 기준의 마련

☐ 참고자료

<폐기물관리법령 및 관련기준>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

▶ 법률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생략)

②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는 별표 4의2와 같다.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2.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재생이용하는 유형(R-3, R-4)

가. (생략)

나. R-4: 직접 재생이용하는 유형

1) R-4-1: (생략)

2) R-4-2: 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품 등 비금속 광물제품이나 아스콘, 아스팔트, 고화제(固化劑: 고체화를 위한 첨가물)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기준>

▶ 법률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 시행규칙 제14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말한다.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생략)

바. 별표 4의2 제2호나목2)에 따른 재활용 유형으로 골재 제품을 제조해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유형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표 제4호가목·나목·다목 또는 바목에 따른 유형으로만 재활용할 수 있다. ※ 별표4의2 제4호 바목 R-7-6: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유형

2.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

나.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재생이용하는 유형

2) R-4 유형의 재활용 기준

가) R-4-2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미만인 폐기물만 재활용해야 한다.

(2) 건설용 골재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4) 금속 또는 비금속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시멘트 제조 또는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급냉, 수쇄·풍쇄 등을 통한 파쇄 공정을 거쳐 입자상 또는 분말상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5) ~ (13) (이하생략 : 관련법령 참조)

< 환경표지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21-164호 >

▶ 재활용골재(EL746:2020 / 골재 및 미분말)

-적용범위 : 이 기준은 무기성 건설폐기물, 폐 유리, 폐 요업 재료(폐 도자기, 폐 타일 등), 소각 잔류물, 무기성 슬러지, 기타 제품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폐재류(폐 석회, 폐 석고, 폐주물사, 폐 석분 등)를 이용하여 만든 골재 및 미분말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과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환경기준

· 일 반 제 품 : 『폐기물관리법』 상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과 동일

· 매체접촉형 제품 : 『폐기물관리법』 상 소각재 용출기준(지정폐기물기준 보다 강화)

-품질기준 : 밀도, 입도, 마모율, 안전성, 흡수율 등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기준 >

- ▶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 ▶ **법률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p>*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52호> ▶성토용 순환토사 : 환경기준 : 『토양환경보전법』 상 토양오염우려기준 품질기준 : 시방다짐, 체통과율, 소성지수, 이물질함유량 등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품질인증사항 실태조사</p>

< 농지법 및 하위법령 >

- ▶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시행령 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 ▶ **시행규칙 제4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객토, 성토 및 절토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제4조의2 관련)	
구분	기준
1. ~ 2.	(생략)
3. 성토	가.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려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

<농지의 성토에 사용할수 없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의 범위>

▶ 질의요지

-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바목에 따른 R-7-6 유형(이하 “R-7-6 유형”이라 함)은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에 포함되는지?

▶ 법제처 법령해석

- R-7-6 유형이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구체적으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의 기준이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의 기준 또는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의 기준이 신설될 당시 농지의 객토·성토·절토의 공통 기준인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라목1)바)에서는 R-7-6 유형의 재활용 기준의 하나로 농지에 성토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R-7-6 유형은 관할 시·도지사의 판단을 거쳐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음이 문언상 명백함

▶ 법령정비 권고사항

- R-7-6 유형이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R-7-6 유형을 농지에서 성토재로 이용할 수 있다고 재활용 기준을 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라목1)바)(1) 규정과의 관계 및 R-7-6 유형이 실제 농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지에서의 성토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재활용골재와 순환토사 품질기준 비교표>

재활용골재	순환토사
<p style="text-align: center;"><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폐기물의 재활용기준)></p> <p>▶R-4-2 유형의 재활용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법』 상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 미만의 폐기물만 재활용 - 건설골재로 재활용시 순환골재 품질기준(토양 오염우리기준) 준수 - 콘크리트용 골재로 공급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용도별 규격 또는 품질에 적합 - 비산재·소각재 등 재활용시 별도의 용출기준(지정폐기물기준 보다 강화) 및 중금속 함량기준 충족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표지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21-164호></p> <p>▶재활용골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제 품 : 『폐기물관리법』 상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과 동일 · 매체접촉형 제 품 : 『폐기물관리법』 상 소각재 용출기준(지정폐기물기준 보다 강화) - 품질기준 : 밀도, 입도, 마모율, 안전성, 흡수율, 등 -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사후관리 : 인증 후 1년이 지난 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인증기준 준수여부, 사업장의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해 실시 · 특별사후관리 : 민원 또는 품질저하 우려시 실시 	<p style="text-align: center;"><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p> <p>▶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6. (생략) 7.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p>▶ 법률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p> <p>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52호></p> <p>▶성토용 순환토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준 : 『토양환경보전법』 상 토양오염우리기준 - 품질기준 : 시방다짐, 체 통과율, 소성지수, 이물질함량 등 -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품질인증사항 실태조사

수입 · 관세

건의자 :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광주전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

□ 수입대두 현황 및 문제점

- 대두(콩)는 농식품부가 aT를 통해 ①직접 배분(직배)·판매(공매) 하거나, ②수입권을 배분(FTA 수입권배분)·판매(수입권공매)하는 방식으로 실수요단체 및 개별업체에 공급 중
- 농식품부·aT의 직배대두 공급축소로 '17년부터 수입대두 부족문제가 해마다 반복, 조기공급분 차감 등으로 부족량 누적·증가
- 공급부족 심화로 올해 정부가 3.3만톤을 증량하였으나, 전량 공매로 공급 결정(농식품부, aT, 실수요자간담회 6.28)
 - 현재 12차례 공매 실시, 13차(11.10)·14차(12월초순) 예정
- **(문제1)** 공매 및 수입권공매는 최고가 경쟁 입찰로써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에 유리하고 중소기업에는 불리한 방식
 - 전국 1,500여개 두부가공업체는 정부에 의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만큼 영세한 기업이 많음
 - 공매로 공급받게 되면 직배콩과의 가격차로 원가 구성이 어렵고, 납품 및 판매가격에 공매가격의 상승분 반영이 쉽지 않아 경영난에 직면
 - 직배가로 공급받는 업체와 공매가로 공급받는 업체의 납품단가가 달라 공매로 공급받는 업체는 경쟁력 약화로 도태, 도산 우려 있음
- **(문제2)** 공매로 인한 최종소비자 가격 상승 우려
 -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3.3만톤을 증량하고 대두공급가격을 연내 동결기로 결정(물가관계장관회의 '22. 3. 4)
 - 표면상 동결되었으나, 최고가 입찰(예정가의 15% 상한) 방식인 공매로 증량분을 공급하여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인상된 상황

- **(문제3)** 정부 증량분 3.3만톤을 실수요단체에 실적비율로 배정하지 않고
공매 실시하여 증량했음에도 부족사태 여전
 - ① 물량 여유 있는 단체도 계속 공매참여 - 실제 물량이 부족한
단체(업체)가 낙찰 받지 못하는 상황 초래
 - ② 위의 이유로 aT에서 11차공매부터 미낙찰업체에 상한가로 추가 공급하여
공매 잔량이 소진되어 예정되었던 공매 회차(15, 16차)가 없어짐에 따라
연말까지 공급계획(16차 공매)을 세워놓았던 단체는 수급에 차질
→ 연말 물량 부족 사태 여전

□ 건의사항

- 연말 수입대두 부족예상물량 직배로 추가공급
 - 연말 부족분을 공매가 아닌 직배로 추가공급 요청
- 익년도 공매물량 폐지(축소) 및 직배 위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 수입원가와 비용상승을 고려, 필요시 '23년부터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변동성 최소화를 위해 공매 폐지(축소) 및 실수요자에 동일한 가격의
대두공급 건의

6 WTO-TRQ · FTA 수입권공매 수입미이행 업체 제재완화

건의자 : 한국두부류제조가공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수입미이행 업체 제재조치

- 수입권공매 낙찰물량 중 ‘3% 이상’ 수입을 미이행한 경우, 수입이행보증금을 전액 귀속하고, 6개월간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국영무역, 수입권공매, 비축물자 판매 등 공사 운영 모든 입찰에 참여 불가

○ (문제점) 대외요인으로 인한 수입미이행 사례 급증우려

- 수입권공매 낙찰 후 △기후변화 및 미국·캐나다의 농산물 작황 부진으로 대두 생산량 급감 및 변동성 심화, △컨테이너 해상 운임 상승, △달러 환율 급등 등의 예기치 못한 대외요인으로 계약단가가 1,800원/kg으로 인상
- 가격변동성 심화로 수입이행에 어려움이 가중, 조합 및 소속 업체에서 수입이행을 포기하는 사례 발생

(참고) `17~`23년 무관세 FTA 수입권배분 실수요자 계약단가
(`17,18)750원→(`19~21)800원→(`22)1,045원→(`23)1,550원

- WTO-TRQ·FTA 수입권공매 입찰은 매년 3~4월에 진행하므로 6개월간 부정당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내년 수입권공매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

□ 건의사항

- WTO-TRQ · FTA 수입권공매 수입미이행 업체 제재완화
 - 2023년 한시적으로 입찰제한기간 면제

7 수입팔 직배 시 영세 중소기업 실수요단체의 배정신청량 우선배정

건의자 : 한국제과제빵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 **(품목개요)** 가공용 팥의 시장접근물량(TRO)은 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한 지정기관 배정방식 (이하 “직배”), ② 수입권공매의 혼합방식으로 관리됨
 - 직배는 최근 2개년 직배대상자의 공급실적비율*을 기준으로 배분

< 직배대상자의 공급량 배분 기준 >

$$\text{직배대상자의 공급실적비율} = \frac{\text{개별대상자의 공급실적}}{\text{전체대상자의 공급실적총합}}$$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2021.12.31.)」에 따르면 ‘원자재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2022년 팥·녹두 물량으로 현행보다 9,200톤 증량된 2만3,894톤 공급될 계획
- **(활용현황)** 소규모 제과제빵·떡류 제조업체는 제품에 활용되는 팥을 주로 수입에 의존하여 충당
 - 국산팥은 주로 가정용으로 이용되고, 수입팥은 제과제빵 및 떡류 등을 만드는 가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 한국제과제빵협동조합*과 같은 소규모 실수요단체의 경우 직배물량을 배정받아 여러 업체에 소량씩 공급하고 있음

* 한국제과제빵협동조합은 중소기업 28개사에 288톤의 물량 공급('21 기준)
→ 개별업체별 최솟값 2톤, 중윗값 7톤 규모의 소규모 물량 공급

- **(문제점)** 전체 직배량이 줄고, 감소량을 수입권공매로 대체하지 못함에 따라 공급실적 비율 또한 줄어들어 중소 협·단체의 배정량은 지속 감소
 - 한·미, 한·캐나다 등의 FTA 협정으로 팥의 FTA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가공용 팥 직배공급량 축소하고 있음

< 최근 3개년 수입팔 직배 공급량 > (단위: 톤)

기준연도	2020	2021	2022
총량	16,694	16,750	15,894(△5%)

- 정부에서는 쌀 부족량을 수입권공매 입찰로 충당토록 하고있으나 영세 중소기업은 저장공간, 자금* 등이 부족하고 소요물량이 적어 수입권공매 입찰이 어려움

* 배정단가 : 2,200원/kg, 공매도 예상단가 : 3,500원/kg

- 현행 직배물량 공급기준은 “2개년 직배량 공급실적” 에 “수입권공매를 통한 공급실적” 을 포함해서 산정. 이에 따라 수입권공매 물량을 입찰하지 못한 소규모 실수요단체는 공급실적 비율이 점점 축소되고 있음. 반면, 수입권공매가 가능한 대규모 기업 등으로 지정기관 배정량마저 전환되고 있음

< '22 한국제과제빵협동조합 배정현황 > (단위: 톤)

구 분	배정신청량	평년사용실적 (2개년)	금년 배정량	증감량(비율)
물량(톤)	400	288	262	△26(9%)

* '22 기준 감소량(26톤) 으로 인해 신규가입 희망하는 영세업체 공급 제한 및 기존 업체에도 공급물량 감축

- 또한 쌀 직배량 부족 시 10톤 미만의 물량을 배분받는 제과제빵·떡류업체의 생산량은 비례적으로 감소하고 영세업체들의 경영 환경은 연쇄적으로 악화
- 아울러, 연간 300톤을 배정받는 영세 중소기업 실수요 단체(전체물량의 1.6%)와 4000톤 이상 배정받는 단체의 물량을 동일하게 배정·감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함

□ 건의사항

- 직배공급으로 영세 중소기업 실수요단체*의 배정신청량을 우선배정 후 잔량을 나머지 업체에 현행기준(공급실적비율)으로 배정 요망
 - 제도 보완을 위해 연말에 제출하는 공급계획, 예년의 공급실적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제출된 배정신청량의 신뢰성 제고

* 업체별 평균공급물량 20톤 내외인 실수요단체

건의자 :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 식품용 전분은 대체성이 높고 다양한 형태를 혼합해 사용 가능
 - 업체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니옥전분에 대한 수요 급증 추세
 - * 매니옥전분 및 변성매니옥전분 수입량: ('20) 10,658→('21) 15,289톤
 - * 매니옥전분의 수입가격은 고구마전분 53%, 감자전분 75%, 변성매니옥전분 75% 수준
- 식품용 매니옥전분, '14년부터 한·아세안 FTA TRQ 물량 9,600톤 중 5,000톤을 당면용과 감자떡가루용 등 식품용으로 배정 中
 - 그러나, 해당물량으로는 급증 추세인 매니옥전분 수요를 충족하기 부족한 실정 * 조합추산 2만톤 이상부족

<한·아세안 FTA TRQ 매니옥전분 운영현황>

용도	양허세율 (협정세율)	추천기관	배정물량(톤)					
			'17	'18	'19	'20	'21	'22
계			9,600	9,600	9,600	9,600	9,600	9,600
식품용	9%	aT	3,000	3,000	4,000	4,000	5,000	5,500
제지용		제지연합회	5,500	5,500	4,600	4,600	3,600	3,200
사료용		사료협회	1,100	1,100	1,000	1,000	1,000	900

- FTA물량외에 WTO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매니옥전분을 식품용 물량으로 신규책정 및 aT를 추천대행기관 지정 할 필요
 - 현재 제지용에 대해서만 기본물량 2,400톤에 매년 증량수요 충족 中
 - * '22년 증량물량 : 11,900톤

□ 건의사항

- WTO 시장접근물량에 식품용 매니옥전분 20,000톤 이상 신규 배정
 -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등 관련 고시 개정

□ 신구조문대비표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고시) 【별표1】

품목구분	HS 코드	품명	TRQ 물량 (톤)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양 허 관 세 추천대행기관
매니옥 전분	1108-14-1000	매니옥(카사바)전분(식품용)	2,400	실수요자배정	한국제지 연합회 · <u>한국농수산</u> <u>식품유통공사</u> (추가)
	1108-14-9000	매니옥(카사바)전분(기타)			

건의자 : 한국낙화생가공업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 **(품목개요)** 땅콩은 농가피해 최소화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수입관리품목으로 지정되어, WTO양허관세 적용이 가능한 시장접근물량 (이하 TRQ)을 설정·운영 중
 -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 혼합방식으로 땅콩협회, aT 등을 통해 배분되며, 10,500톤이 '22년 물량으로 공급될 계획
 - 해당 TRQ물량에는 24% 또는 40%의 추천세율이, 초과분에는 230.5% 또는 63.9%의 고율의 미추천세율(Out-quota tariff)이 적용

< 낙화생(땅콩) 관세 및 물량 > (단위 : %, 톤)

기관	세부품목	HS CODE	관세율 (저율/고율)	물량		
				기본(a)	증량(b)	합계(a+b)
땅콩 협회	기타	2008.11.9000	40/ 63.9	4,000	5592.7	9592.7
	종자/탈각	1202.30.2000	24/230.5	457.3	-	457.3
	기타/탈각	1202.42.0000	24/230.5			
aT	종자/미탈각	1202.30.1000	40/230.5	450	-	450
	기타/미탈각	1202.41.0000				
	종자/탈각	1202.30.2000	24/230.5			
	기타/탈각	1202.42.0000				
합계				4,907.3	5,592.7	10,500

- **(활용현황)** 국내 땅콩 제조·가공업체는 약 250개사로, 4만톤/연 가량 소비
 - 국산물량은 1.3만톤 내외로, 부족분은 중국 등에서 수입물량 (양허물량 + 일반관세 물량)으로 충당
 - 국산물량은 주로 기호식품용으로, 수입물량은 제과·제빵 및 아이스크림 등을 만드는 가공식품용으로 시장이 분리

○ (문제점)

- ① 땅콩은 타 수입관리품목 대비 시장접근세율이 높아 시세급등에 따른 가격인상 압박이 지속

* (땅콩) 40% VS (맥주맥) 30% (인삼) 20%, (밀전분) 8%, (대두) 5%, 등

- 주 수입국인 중국산 땅콩은 경제성장에 따른 인건비상승,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 코로나 등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실정

② 땅콩과자의 수입관세는 8%에 불과하나, 땅콩을 수입해 과자로 가공하는 경우 40%의 관세가 부과 ⇒ 국내中企 역차별 발생

- 국내가공은 포기, 원료확보가 용이하고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완제품을 수입하려는 경향 ↑

< 땅콩함유 과자류 수입관세 >

국가	중국	미국	EU	아세안	VS	조제땅콩
관세	8%	0%	2.6%	0%		40%

③ 오리온 등 4-5개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한 기업으로, 환율 및 식품원자재 전반의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

- 밀가루(30.7%), 계란(86%), 유지(106%)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
- 식품 中企의 83%가 경영 악화를 호소하였으며 46%가 ‘원자재가격 상승분에 비해 제품가 인상 어려움’ 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수입곡물 영향조사’(22.6)

□ 건의사항

○ 땅콩 할당관세 적용 : 조제땅콩 40% → 24% / 생알땅콩 24% → 8%

- 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공수율(84%)을 감안, 조제땅콩과 생알땅콩의 관세차(16%)를 유지

* '11~'12년 원료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급등 완화를 위해 할당관세(24%) 및 '22년 시장접근물량 증량조치(6천톤) 旣시행

10 국내 전분산업의 유지방안 마련

건의자 : 한국전분공업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 전분산업은 국산 고구마, 감자를 원료로 이용해 전분제품을 생산하는 국산 농가보호 산업
 - 매년 고구마는 전체 생산량의 약 5%, 감자는 전체 생산량의 약 2%를 전분용으로 수매('2015~'2018)
- 생산원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으나 수입전분과의 가격차로 판매 단가를 올릴 수 없어 업계의 채산성 하락
 - 국내 생산량은 2,538톤, 전국 생산업체는 4곳 뿐(2021년 기준)
- 매년 수입전분 FTA물량 점진적 확대에 따른 국내 전분산업 위축 영향
 - 정부에서는 산업기반 보호를 위해 '한-아세안 매니옥전분 TRQ 수입권 배분 자격으로 국산전분 5톤이상 구매'를 조건화하였으나 이마저도 2024년 폐지논의*
 - ※ 출처 : 한-아세안FTA TRQ 매니옥전분 배분기준 변경 간담회('22.9.30.)
- 환율상승, 이상기후와 수출제한 등의 지정학적 이슈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생산기반 보호 필수

□ 건의사항

- 국산전분 시장의 영세성과 소규모인 구매조건을 고려해 한-아세안 매니옥전분 수입권배분 자격으로 국산전분 구매조건 '5톤' 유지
- 국내 전분산업의 생산기반 유지방안 마련
 - ① 고구마, 감자생산 농가 장려를 통한 원료 품질향상, 단가인하
 - 품질개량(전분용 고구마·감자 종자의 개발 및 보급 확대)
 - 식량작물 지원사업 고구마·감자 지원 확대

② 군급식 식자재에 국산전분·당면 사용 권고 및 구매촉진

- 장병 영양섭취기준 급식품목으로 국산 전분·당면 구매 요청

※ 학교급식은 농산물직거래법, 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국산 농산물 등 거래 권고화 되어 있음

③ 전분 생산 시기에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전분제조업체 보호

- 전분박 처리과정 중 악취에 대한 제주도 관광객의 민원, 환경청 수시 폐수조사로 업무에 애로
- 집중 생산시기만이라도 민원 및 폐수조사를 유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련 부처에 협조요청

식품 · 기타

11 김치업체 대상 배추 수급안정 대책 마련

건의자 : (사)대한민국김치협회

□ 현황 및 문제점

- 배추는 대부분 김치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고 배추부족은 김치업체의 안정적 김치생산·공급에 차질 발생
 - 최근 태풍, 폭염, 한파 등 계절별 이상기상 발생빈도가 높아지면서 배추부족 및 가격폭등으로 김치업체의 생산 및 수출에 차질 발생
- 특히 하절기(7~9월)의 경우 상품김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수확량변동이 심한 고랭지 배추로는 김치의 안정적 공급에 한계
 - 6~9월중 이어지는 가뭄, 고온, 폭우, 태풍 등 기상영향으로 하절기 배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가격 폭등이 반복되고 있음
 - 소비자의 하절기 김치(배추) 수요가 증가하는 상태에서 생산량 변동이 심한 여름철 배추로는 김치업체 배추확보에 한계
- 배추의 대량소비처이면서 김치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김치업체를 대상으로 한 하절기 배추수급대책 마련이 필요

□ 건의사항

- 정부 원예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배추부분)의 위기단계별 대응 대책에 김치업체 대상 배추수급대책을 추가
- * (예) 상승~심각단계 : 김치업체에 대한 정부비축물량 확대 및 공급 등

12 식품제조업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건의자 :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 입법 동향

농산물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필요

-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정 및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원료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이 가중된 사료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세부담 완화와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공제율 상향 입법발의 ('22.9.1,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 * 개정안 : 제조업(가목에 사료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포함 106분의 6)
-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경기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등 대내외적인 사유로 외식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음식점업 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농·축·수산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공제율 상향 입법발의 ('22.10.25, 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 * 개정안 : 음식점업 니목(108분의 8 → 109분의 9), 다목(106분의 6 → 107분의 7)

□ 현황 및 문제점

- 식품제조업은 식재료를 가공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점, 생활 물가지수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음식점업과 유사 산업
- 현행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음식점업과의 차등을 두고 있음
 - 2019년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에 따른 공제액 2조 8,974억 중 음식점업이 2조 5,138억원으로 86.7%
 - 음식점업과 식품제조업 간 과세의 형평성 문제 완화 필요
- 또한, 줄어드는 밥쌀 소비를 대체하고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가공식품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며 쌀을 포함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제조업소에 세제 지원을 통한 소비확대 필요

< 부가가치세법 제41조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구분		율
1. 음식점업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02분의 2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106분의 6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104분의 4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담회’에서 글로벌 곡물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해 업계를 대변해 “공제 한도 및 공제율 확대” 의견 제시하였으나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제 한도 10%p 상향 결정(‘23.12.31일까지)
- 과세표준에 대한 공제 한도율 상향으로는 식품제조업에 대한 실질적 세제 지원 효과가 미미하며, 가파른 물가 상승과 임대료·인건비 등 경영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음
- 생활·밥상물가 안정이라는 목적 달성에는 공제 한도 상향보다 공제율 상향 필요

□ 건의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개정으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상 공제율을 음식점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

□ 조문 대비표

< 현 행 >

구분		을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106분의 6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104분의 4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 개 정 >

구분		을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108분의 8
	나. 가목 외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106분의 6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4분의 4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13 약용작물 기반 식품제조업 연구개발 지원

건의자 :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 한약재 수입 증가로 국내 약용작물 생산의 지속적인 감소추세
 - 국산 약용작물은 내수 위주로 소비되나, 점차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약용작물 재배면적이 축소* 되는 실정

<노지 약용작물 재배면적> 출처 : KOSIS

연도	2016	2018	2020	2022
합계 (단위 : ha)	15,115	12,669	10,954	9,274

- 재배농가와 약용작물 기반 식품제조업의 영세성으로 시장의 성장 정체
 - 중소 제조업체들의 경우 자체 R&D 및 마케팅의 영세함으로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가 불가능하여 악순환이 반복
 - 동시에 판로를 찾지 못한 약용작물 농가의 재고 누적과 매출 저하
- 국산 약용작물 함유 식품 성장이 부진한 반면 건강기능식품*, 헬스케어 시장은 다양한 기술 접목,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폭발적 성장
 -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건강관리, 면역에 대한 관심 증가로 폭발적 성장
 - * 2021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액은 2,711,950백만원으로 2012년 대비 2.57배 증가, 약 5조 원/년의 시장규모 (출처 : KOSIS, 조선일보)
 - 유전자 검사, 구독 서비스 등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가 확대 추세
- 약용작물 기반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개인 체질·증상별 맞춤형 식품 추천을 위한 제조와 섭취판매 매뉴얼이 필요하나 자체 R&D 실행이 어려운 실정
 - 조합은 유전자 분석업체 (주)마크로젠과 알파75 주식회사와 협력을 통해 개인별 맞춤 데이터 축적 중
 - 체질·증상별 맞춤 처방이라는 강점을 발휘 가능한 분야로, 약용작물 농가와 식품제조·판매업체 진흥 및 시장 확대 기대

□ 건의사항

- 약용작물기반 식품제조업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체질·증상별 맞춤형 약용작물 기반 식품 개발로 新시장 창출 기대

14 농협 중소기업자 지위인정에 대한 中企 입장

건의자 : 인천김치절임류가공사업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 국회 농림위, 농협 간주中企 인정 유효기간 5년 연장 대안의결(11.10)

- (기존) 특례조항 2022년말 종료 ⇒ (개정안) 2027년말까지 연장

- 지난 2010년 이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공조달시장에서 ‘농협’ 참여자격 제한
 - * (10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 수의계약 대상에서 농협 제외(일몰시한 '15.12.31.)
- 2017년 농협법이 재개정되며 지역농협 등을 다시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설정된 5년의 유효기간 일몰시기가 금년 도래('22.12.29)
- 하지만 올해 농협법의 특례조항이 만료됨에도 농협은 유효기간 연장 및 폐지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 내 중소기업 영역의 지속참여를 모색하고 있음
- 농협은 올해 8개 지역농협 공장을 통합해 새로 출범한 자체브랜드인 ‘한국농협김치’와 ‘하나로마트’라는 전용판로를 중심으로 대기업과 경쟁하며 매출 1,275억 원으로 전체 김치시장의 약 9%의 점유율을 차지
 - * 관련출처 : 한국경제 이성의 농협중앙회장 인터뷰 기사 (2021.11.28.)
- 반면, 국내 중소기업은 중기간 경쟁제품을 통해서 판로를 확보하고 있으나, 김치의 경우 현재 4종만(배추, 열무, 총각, 깍두기)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 품목의 공공조달 시장 규모는 471억 원으로 전체 김치시장 1조 4천억 원의 3.4% 수준에 불과
 - * 관련통계 : (전체시장)2019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 (공공조달)조달정보개방포털
- 따라서 농협은 민수시장에서도 판로의 기반을 다진 만큼 공공조달 시장은 마케팅 역량, 브랜드파워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농협은 학교급식 김치납품 중이나 조달청의 군납식품류 다수공급자계약(MAS) 전환에 따라 지역농협 간주 中企 인정 유지시 MAS 진입 통해 추가적인 공공시장 참여 가능

⇒ **농협이 보유한 자금력과 유통력 및 인지도를 바탕으로 공급 수요 독식우려**

- 대기기업의 유통망 및 영업력을 바탕으로 시장 장악과 농협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 등으로 인해 김치 생산 中企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며, 상대적 인지도 및 브랜드파워가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은 민간시장에 이어 공공조달 시장마저 잠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건의사항

- 現 농협법 상 유효기간 만료('22.12.31) 이후 농협에 대한 중소기업자 지위인정 불인정
 - 농협법 제12조의 3 폐지
 -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제1호 삭제

※ 관련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 3(판로지원법과의 관계) 조합 등이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 등을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 계약 할 수 있는 자로 본다 (부칙 : 유효기간 5년)

◎ 판로지원법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 <개정 2011. 3. 30., 2016. 1. 27.>

1.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서 면 건 의



1

「해외전시회 홍보관 설치운영」 관련 발주방식 일원화

건의자 :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 ‘해외전시회 홍보관 설치운영 사업’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전시홍보관 설치서비스」*에 해당되며,
 - 단순 홍보관 설치 외 무역상담,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홍보, 홍보물 제작 등 용역에 수반하는 부수적인 업무수행을 함께 요구하는 만큼 ‘공사’가 아닌 ‘용역’으로 발주 필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 품명 해설】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의 전시회를 위해 여러 가지 규격의 전시자재를 사용하여 독립된 형태의 전시홍보관 및 관련 부대시설을 설계, 제작, 설치, 기획운영하는 서비스

- 하지만 일부 농식품부 산하기관에서 관련 사업추진 시, 동일 품목에 대한 다른 발주방식으로 업계의 혼란 가중
 - 용역에 수반하는 업무수행을 요구하면서 ‘용역’이 아닌 ‘공사’로 발주하거나, 동일 품목에 대한 다른 발주방식으로 업계의 혼란 가중

< 「해외전시회 홍보관 설치운영」 사업 관련 발주방식 사례 >

업무	공고번호	공 고 명	공고기관	계약방법
공사	20220716 667-00	2022년 터키 이스탄불 식품박람회(WTI) 한국관 설치공사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수익(소액)
용역	20220727 495-00	2022년 파리식품박람회(SIAL Paris) 농식품기업 홍보관 설치 및 운영 용역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협상에 의한 계약

- 또한 입찰참가자격등을 각각 달리 적용함으로써 일부 전시사업자의 피해 발생(업역침해, 무자격자의 참여 등)

업무	공고번호	공 고 명	입찰참가 자격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20220727 495-01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2022년 파리식품박람회 (SIAL Paris) 농식품기업 홍보관 설치 및 운영 용역	-전시부스설치서비스 또는 전시홍보관 설치서비스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해외박람회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공동이행방식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20220720052 - 00 (한국농업 기술진흥원)	2022 터키농업박람회 한국관 운영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 -공동이행방식

□ 건의사항

- 농식품부 산하기관의 「해외전시회 홍보관 설치운영」 관련 발주 방식 일원화
 - '공사'가 아닌 '용역'방식으로 발주될 수 있도록 산하기관에 지침 준용 안내
 - 실제 과업과 관련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개선

2 수도권에 김치 체험·전시관 건립 지원

건의자 : (사)대한민국김치협회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전통식품인 김치는 수출이 점차 확대되며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가위상을 드높이는 세계적인 식품으로 거듭나고 있음
 - 작년 김치 수출액은 1억 5,990만불로 역대 최고치로 1천 920만불의 무역수지 흑자 기록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식품
 - * 2001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Kimchi’ 가 국제식품규격으로 인정 및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 또한 미국 등지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하고 있음에도 김치종주국인 대한민국의 서울에 김치 문화를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부족
- 최근 주부들이 김치를 직접 담그지 않아 국내 어린이·청소년들의 가정내 김장문화에 대한 인식 저감, 전통 김치·김장문화 계승에 위기
 - 농촌경제연구원(2020)에 따르면 김치를 직접 담근다는 응답이 ‘60대 이상’은 59.6%인 반면, ‘30대’, ‘40대’에서는 각각 14.5%, 22.6%에 불과
- 대외적으로 김치종주국 위상 공고화, 대내적인 전통 김치문화 계승을 위해 김치전시관 설립해 홍보 및 체험학습 체계화 요망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을 촉구하는 관련 법령>

* (법령) 김치산업진흥법 제 20조(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단체는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건의사항

- 서울 또는 경기지역에 김치의 체험 및 전시관 건립 지원
 - * 예 : 유치원, 초중고, 외국인대상 김치문화체험, 서울시민 김장담그기 등

3 농업진흥구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부지면적 제한완화

건의자 :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 현 황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내 15,000㎡ 미만의 부지면적에 한해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운영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8항」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내 건폐율 60% 제한
- ☞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면적 확대 필요

□ 문제점

- 농수산물 가공업체에서는 내수 및 수출물량 증가에 따른 생산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축하여야 하나 관련법에 따라 부지면적 및 건폐율 제한으로 추가 시설 신·증축 불가
 - 유희부지가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하고 산업단지 등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 발생
 - * 부지면적 완화 시 대지가 확보된 상황에서 건축비만 소요되지만, 완화되지 않는다면 부지매입에 따른 불가피한 추가자금 발생
 - 업계에서는 원부자재 및 제품창고 부족 등으로 인해 기존 공장과 떨어진 창고를 임시 사용하고 있어 관리비용 증가 및 효율성 감소
- 농산물 가공·처리시설과 유사한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 건폐율 제한은 동일하나, 30,000㎡ 미만의 부지면적 활용이 가능하여 농산물 가공업체와 형평성 문제 발생
 - 미곡종합처리장과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은 원재료(국내농산물)와 시설 목적(원재료 가공·처리)이 유사

□ 건의사항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나목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활용 부지면적 제한을 미곡종합처리장 기준에 비슷한 25,000㎡ 이상으로 상향 조정

* '15.1.1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 1만5천제곱미터 확대를 통해 농업의 규모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

□ 기대효과

- 부지면적 제한완화를 통해 국내산 농수산물 활용 증가 가능
- 지역 농촌경제 활성화, 도시 자본 유입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건의자 : (사)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 현 황

- 현행 계란이력제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입·출고 실적 신고에 필요한 거래내역 등을 거래완료일까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전산신고(PC 또는 모바일앱) 해야 함
- 계란이력제 신고내용은 기존에 관련부처에 제출하는 정보와 중복
 - 현행 농장부터 유통단계까지 계란의 이력과 관련된 자료는 ①난각(껍데기) 표시정보, ②입고검사서, ③식용란거래·폐기 내역서, ④식용란 선별포장확인서 등

□ 문제점

- 계란유통업체의 상당수가 고령화되어 PC·모바일앱 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거래마다 거래이력을 전산으로 신고하는 것은 지나친 경영상의 규제
 - 계란수집판매업의 경우 HACCP인증 업소라고해도 부부경영 형태의 생계형 영업자가 다수라 행정적 부담의 피해가 큼
 - 디지털정보화 역량이 낮고*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든 고령의 사업자들은 폐업을 고민하는 실정임
- *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역량은 일반국민 수준의 53.9% (과기부,2021)
- 기존에 제출하던 자료로 소비자에 정보제공, 계란유통 관리가 가능한데도 동일한 내용을 전산 신고하는 것은 중복규제로 작용
 - 난각표시정보로 소비자에게 산란일자, 농장, 사육환경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 식약처에 제출하는 입고검사서와 거래·폐기내역서를 통해 유통 이력을 충분히 추적할 수 있는 상황

- 계란선별과 포장을 위한 전산화된 시스템을 갖춘 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신고 내용으로 충분
 - 선별·포장의뢰서를 기존에 작성해 선별 포장업자에게 제출해왔고, 전산 시스템을 갖춘 선별포장업 영업자가 현행대로 선별포장실적 및 확인서를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

□ 건의사항

-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전산신고 축소 대안 마련
 - 식용란 선별포장업자가 기입할 수 있는 내용, 기존 식약처 제출 정보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 식용란 선별·포장확인서 등) 등 신고 제외하는 방안 요망

